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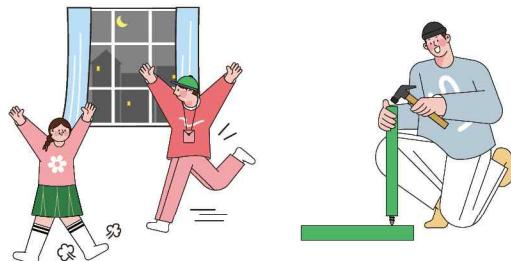
층간소음 방지

층간소음 개요

- ✓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음향기기 발생 소음 등
- ✓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대각선 위치 세대 간 소음 포함)
- ✓ 범위와 기준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환경부 공동 부령)

층간소음의 종류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기 등 동작으로 인한 소음

- ▶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가구 이동하는 소리
- ▶ 어른의 발소리,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 소리, 망치질이나 못 박는 소리

공기전달 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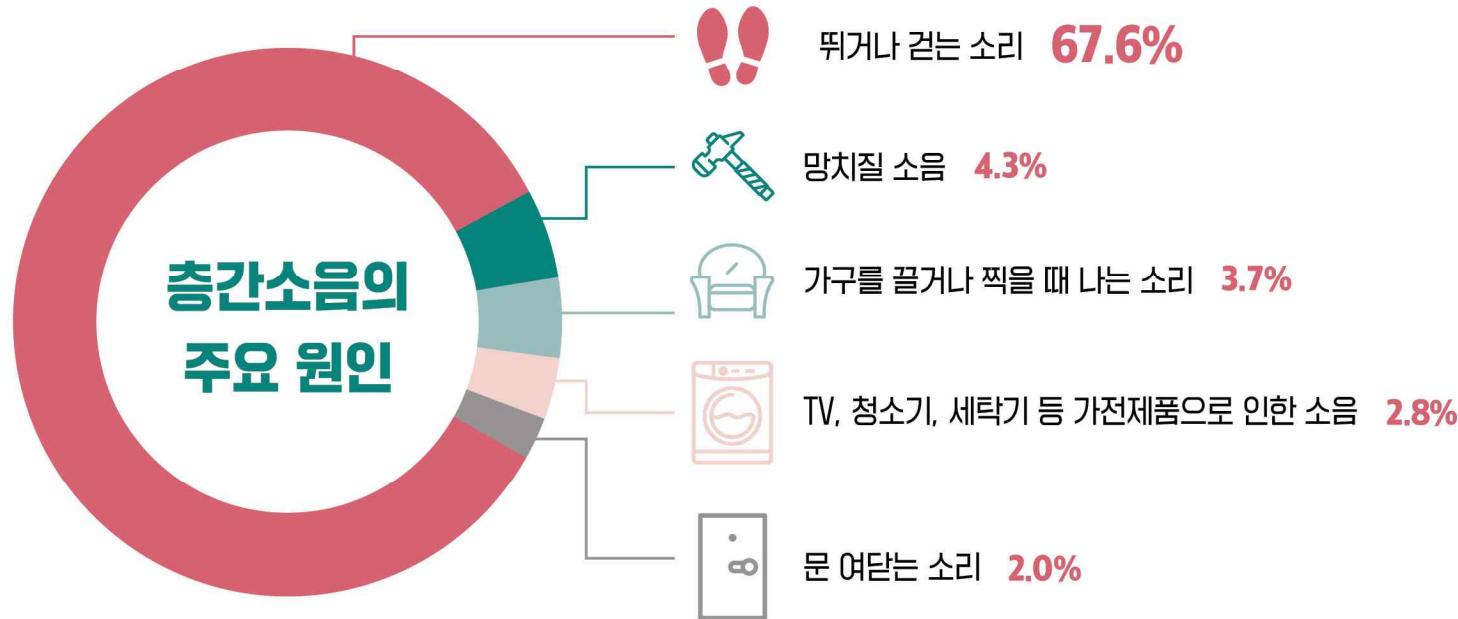


TV, 음향기기 등 소리를 내는 물건 사용으로 인한 소음

- ▶ TV 소리, 오디오 소리 등 각종 음향기기 소리
- ▶ 피아노 등 악기소리

총간소음 방지

총간소음의 주요원인



원인	비율
뛰거나 걷는 소리	67.6%
망치질	4.3%
가구 (끌거나 찍는 행위)	3.7%
가전제품 (TV, 청소기, 세탁기)	2.8%
문 개폐	2.0%
악기 (피아노 등)	1.5%
기타	18.1%

※ 2012~2020년 총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현장진단 접수 사례 60,061건 기준(출처: 환경부, 2021. 9. 15.))

총간소음 방지

총간소음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입주자 의무사항

: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총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동주택 총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 · 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총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제2조(총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총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총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총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총간소음 방지

총간소음의 기준 (제3조 관련)

총간소음의 구분		총간소음의 기준 [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39	34
	최고소음도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45	40



1분간 및 5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며,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하면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표의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합니다.

층간소음 방지

층간소음 관리 대응 체계

1단계



관리주체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관리의 주체이며, 층간소음 분쟁발생시 초기대응 역할을 합니다.

관리주체는 관련 법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 중단과 차음 조치를 권고하고 입주자 등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항)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는 소음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방문 및 중재를 진행합니다.

2단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리규약에 따라 각 단지에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합니다.

만약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없다면, 아래 3단계 외부기관에 상담과 조정을 요청합니다.

3단계



분쟁조정위원회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외부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외부 기관에 상담을 요청거나,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방지

생활 속의 층간소음 예방팁



TV, 악기 소리 주의



방문 닫는 소리 주의



실내화, 매트 착용



늦은 밤 세탁, 청소 자제



이웃간 사전 양해 구하기

간접흡연 방지

간접흡연 개요

- ✓ 일반적인 간접흡연은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강제적 흡연)
- ✓ 공동주택에서는 이웃집의 흡연으로 발생한 담배연기가 환풍구, 창문 등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와 입주자에게 노출되는 “**총간접흡연**”이 주요 문제로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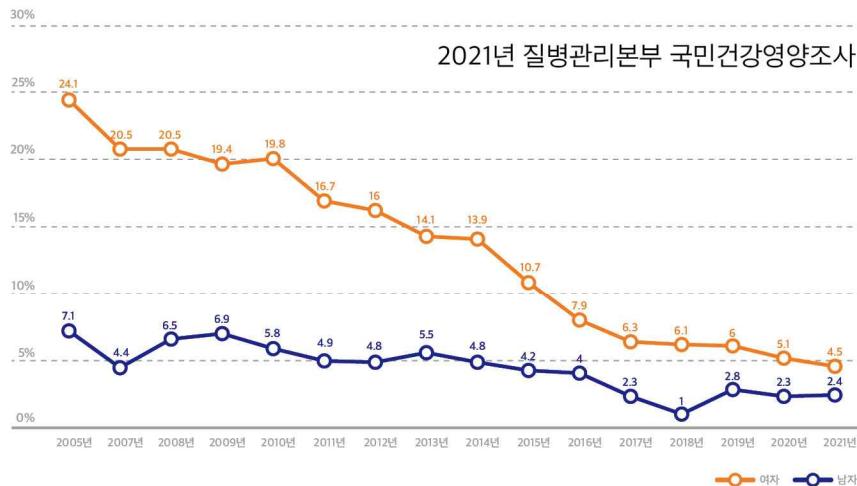
간접흡연 위해성

- ❗ 흡연시 주변공기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부류연(80%)과 흡연자가 내뿜는 주류연(20%)으로 나뉘고, 간접흡연자는 주로 250여종의 발암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더 많이 포함된 부류연에 노출됨
- ❗ 비흡연 성인의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각종 암, 조기사망의 원인이 됨
(폐암발생위험 20~30%, 관상동맥 심질환 위험 25~30% 증가)
- ❗ 어린이의 경우, 급성호흡기질환, 중이염, 천식, 아토피피부염, 비염 등을 유발
- ❗ 전세계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 사망은 연간 약 60만명 수준으로 대부분이 여성(47%)과 아동(28%)임

*출처: 보건복지부 금연길라잡이(WWW.NOSMOKEGUIDE.GO.KR) 홈페이지

간접흡연 방지

국내 가정 간접흡연 노출률



2021년 기준 국내 비흡연자의 자택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남자 2.4%, 여자 4.5%로
실내금연 확산에 따라 2005년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나, **반대로 이웃간 총간흡연
민원은 최근 수년간 증가하는 양상**

분쟁확대에 따른 인식전환 필요

- !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는 총간소음과 같이 이웃 갈등과 분쟁으로 확대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 [총간소음, 간접흡연 민원 5년새 3배.. (2022.10.24. 동아일보 등)]
- ! 공동주택 금연구역도 공동주택 주거공간은 해당되지 않고 외부 공용공간만 해당되어 베란다, 화장실 등을 통한 총간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 흡연은 개인취향으로 가정내 흡연을 금지할 수는 없으나, 최근 실내 금연 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시점에서
간접흡연 문제는 **흡연자의 인식전환이 중요**

간접흡연 방지

간접흡연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입주자 의무사항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간접흡연 대응절차

피해 입주자등

관리주체에
발생사실 알림

관리주체 → 피해 끼친 입주자등

- ✓ 일정 장소에서의 흡연 중단 권고
- ✓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

간접흡연 조정관련 자치조직
(구성된 경우)

관리규약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

간접흡연 방지

간접흡연 노출 규제 정책

01 금연구역 지정제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 국가에서는 국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들로 하여금 중장기적으로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제도 운영중



02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 ✓ 지정권자 : 시장 · 군수 · 구청장
- ✓ 신청조건 :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찬성
- ✓ 금연구역 : 신청에 따라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담배연기 없는 금연 아파트!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공동주택도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에 대해서는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간접흡연 방지

총간소음, 간접흡연 상담 및 조정 관련 기관 현황

01 지자체 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총간소음 상담실	02-2133-7298
서울특별시 이웃분쟁조정센터	02-2133-1380, 1381
인천광역시 총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032-440-4754
	(동구) 062-608-2312 (서구) 062-350-4632
광주광역시 마을분쟁해결센터	(남구) 062-607-4970 (북구) 062-410-8384
	(광산구) 062-959-2642
인천 부평구 이웃소통방	032-509-8828
광명시 총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02-2680-6018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031-656-9280

02 총간소음 측정 및 상담 등 기관

총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서울 외 측정)	1661-2642
환경보전협회 총간소음상담지원센터 (서울지역 측정)	02-3407-1500 (내선 6번)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과 (측정)	064-710-7540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교육)	02-357-4401

03 총간소음 분쟁조정기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031-738-33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69

* 중앙 분쟁조정위 외에 각 지방 분쟁조정위원회 별도 운영